

2026년도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구축사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9.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구축사업
- ☐ 사업목적 : 산업단지 내 산업부산물 현황 등을 조사하여 산업공생맵(자원순환 네트워크)을 작성하고, 자원순환시스템(플랫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주기업 간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및 순환경제 활성화
-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여수)2027년 12월 31일 ^(포항)2028년 12월 31일까지
 - 1차년도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 동안 최소 5년 이상 성과물을 운영
- ☐ 대상단지 : 여수·포항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인근 산단 포함 가능
 - * 주관기관 또는 컨소시엄은 1개의 지역 산단 선택(복수 지역 산단 지원 불가)
- ☐ 선 정 수 : 여수·포항 각 1개 컨소시엄
 - 선정평가를 통해 1개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 차순위 컨소시엄과 협상 진행

□ 사업비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매칭금(지방비+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 (여수)2.(포항)3년간 75억 원

<2026년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구축사업 국비 지원금액(여수)>

(단위:백만원)

사업명	구분	2026년	2027년	합 계
여수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구축사업	정부출연금	3,000	4,500	7,500
	매칭금	1,500	3,500	5,000
총 합계		4,500	8,000	12,500

- 정부출연금 중 전담기관 간접비 : '26년 148백만원, '27년 224백만원

<2026년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구축사업 국비 지원금액(포항)>

(단위:백만원)

사업명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포항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구축사업	정부출연금	800	3,700	3,000	7,500
	매칭금	400	2,600	2,000	5,000
총 합계		1,200	6,300	5,000	12,500

- 정부출연금 중 전담기관 간접비 : '26년 40백만원, '27년 180백만원, '28년 149백만원

* 상기 정부 출연금 및 전담기관 간접비 배분율은 매년 협약(산업부↔전담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매칭금 최소 기준(5,000백만원)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사업비의 연차별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매칭금(지방비+민간부담금) : 50억 원 이상

-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은 현물 매칭 가능하며,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양식7,8] 제출 必

○ 1차년도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여수30·포항8억 원

* '26년 국비 지원금 중 간접비(기획평가 관리비, 4.95% 내외)를 제외한 금액(여수2,852
백만원, 포항761백만원) 지원

<2026년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산업단지 구축사업 1차년도 지원항목>

정부 출연금 지원항목	1차년도 지원금 비율	
	여수	포항
산업공생맵 구축	5% 내외	5% 내외
디지털 인프라(계측장비) 구축	20% 내외	15% 내외
자원순환 시스템(플랫폼) 구축(ISP 수립 포함)	20% 내외	50% 내외
자원순환 설비 지원	45% 내외	20% 내외
간접비	5% 이내	5% 이내
전담기관 간접비(기획평가관리비)	5% 이내	5% 이내

* 각 항목별 지원금액은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토지·건물·건축·인테리어
조성비는 정부출연금(국비)으로 산정 불가

□ 추진체계



* 사업운영위원회 : 협약체결 후 사업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며 자체 장비심의위원회 역할을 통합하여 운영

□ 사업내용

사업유형	사업내용
산업 공생맵 구축	▶ 기업 간 순환자원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여 연계가능한 자원순환 매칭 네트워크 로드맵 작성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여수1차년도, 포항1~2차년도 완료) -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주요 사용 원료, 부산물, 폐기물, 폐에너지 발생 현황 등 물류 시스템 정보 조사 및 최소 2건 이상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주관기관이 비즈니스 모델의 수혜자(부산물 활용 자원순환 사업 대상)가 되는 것은 불가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 부산물 배출현황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을 통한 실시간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실현(여수1차년도, 포항2~3차년도 완료) - IoT센서(부산물 배출현황, 생산공정(원료) 등) 설치를 통해 기업의 실시간 자원순환 지원(공장의 부산물 배출현황 파악 → 폐기물 재자원화 → 기업의 원료로 활용) 가. 디지털 인프라(계측장비) 구축 - 기업별 자원순환 물질흐름 파악을 위한 IoT 센서 및 DB 시스템 구축(10개사 이상) - 산업공생 로드맵에 따라 산단별 주력업종, 부산물 다배출 업체 등 자원순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성과 제고 나. 자원순환 시스템(플랫폼) 구축 - 클라우드 기반 자원순환 네트워크 참여기업의 부산물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저장·가공·분석이 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인프라(계측장비) 연계 - 자원순환시스템(플랫폼) 정보 분석을 통한 유형별 최적 자원순환 수요관리 및 솔루션 제공 -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사업화 지원	▶ 폐기물 재활용에 최적화된 자원순환 설비를 지원하여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여수1~2차년도, 포항2~3차년도 완료) - 산업공생맵과 자원순환 시스템을 연계한 자원순환 설비지원 - 산업단지 내 기업 간 부산물, 폐기물, 폐열 등의 원료화 시스템 네트워크 설비구축 - 산업단지 내 폐기물 감량을 위한 공정개선, 폐기물 재활용 설비 등 관련 시설설비구축 - 산업단지 내 자원순환 및 공공성 확산을 위한 수익 재투자 방안 제시

* 상기 사업내용은 필수조건이며, 그 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화사업 제시 가능

2 신청방법 및 자격

□ 신청자격 : 컨소시엄(주관+참여 N개...)

□ 자격요건 : 주관기관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7.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8.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9.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1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3.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매출액 또는 사업비 기준(사업 관리 감독역할 포함) 10억 원 이상인 기관

- 주관기관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양식9]와 수행실적 증명서류* 제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유사사업】

- 자원순환산업 :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산업(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7항)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5항)
- 그 밖의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따라 산업기반조성사업에 관련한 산업(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참여제한

-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본 사업 참여 및 수행 불가
-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개인사업자인 경우, 기관의 장)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 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 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3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	'26. 4. 29.
↓		
사업계획서 등 신청·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26. 6. 18.
↓		
서면심사(사전검토)	한국산업단지공단	'26. 6월 말
↓		
선정평가위원회(발표평가) * 필요시 현장실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6. 6월 말
↓		
평가결과통보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6. 7월 초
↓		
수행기관(단지포함) 확정	산업통상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6. 7월 초
↓		
협약체결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6. 7월 중
↓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수행기관	'26. 7월 말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수행기관	'26. 7월 말
↓		
중간점검	한국산업단지공단	'26. 9월 중
↓		
2차년도 상세 계획 수립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6. 12월
↓		
사업비정산 및 연차점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6. 12월
↓		
(계속)	(계속)	(계속)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

□ **평가방법**

구분	단계별 주요내용
①사전검토	▶ 전담기관이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참여 제한 여부, 매칭금 등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 시 발표평가 배제
②발표평가	▶ 선정평가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 ▶ 발표평가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점수 산정 ▶ 발표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 ▶ 발표평가 최고점수를 획득한 수행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인 경우, 총사업비 대비 매칭금 비율, 현금 비율 순에 의한 대상자 선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사업목표 명확성 (15)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5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5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5
사업추진체계 ·전략 (50)	○ 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컨소시엄 규모, 참여기관 역할, 연계성 등)	5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5
	○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5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5
	○ 산업공생맵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개요의 적정성	5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구축 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5
	○ 매칭금(지자체 및 수행기관) 비율 및 조달 방안	10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5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5
성과확산 효과 (35)	○ 구축 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10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10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및 수익 재투자 방안, 구축 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15
계		100
가산점 (5)	○ 지자체가 법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폐기물 DB 연계 확약	5

5 추진근거

□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

□ 관련규정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6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26년 4월 29일(수) ~ 6월 18일(목) 15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e-mail 접수

- 제출공문을 같이 제출해야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 종이서류 원본 직접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USB 1개에 저장하여 직접 제출하고, 접수 이메일로 송부
- 모든 서류는 지류 제출 및 PDF 전자파일을 USB 1식 및 메일 제출 필수
- * 이메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PDF/한글 각 1부씩 제출

□ 제출서류 : 별표 참조

- 별표를 참조하여 공문,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등 제출서류 일체를 지류제출 및 USB 1개에 저장하여 직접 제출하고, 접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처 및 문의처

접수처	주소	이메일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산단e사업팀(9층)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heejin4332@kicox.or.kr	070-8895-7208

7 유의사항

□ 사업의 지속 운영 및 관리방안

- 사업수행(‘26 ~ 여수·포항 ‘27. ‘28) 완료 후, 사업의 지속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과제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필수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특수 목적법인(SPC) 등을 구성하는 등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은 협약체결 과정에서 공단과 협의하여 소유권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단, 자원순환 시스템(플랫폼)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에서 구축 및 소유, 운영하여야 함

□ 수용가 선발 방안

-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순환경제사회 촉진법에 의거 순환 경제성과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순환경제 사회 촉진법 제 15조 대상)
- 신청기관이 20개 이상의 수용가 후보군(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 시스템, 설비 지원 등)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후, 적격심사(서류)를 거쳐 최종 확정
- * 디지털 인프라(계측장비) 구축은 10개 기업 이상 모집
-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특성, 수용가 규모 등에 따라 수용가 후보군 협의 가능

□ 자원순환 사업 대상자

- 참여기관 중 폐기물을 자원순환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순환경제성과관리 대상자 또는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관련 사업 허가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본 사업의 수행기관은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의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1차년도)하고 활용하여야 함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 준용

□ 공공목적의 데이터 제공

- 사업 결과 확보되는 데이터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까지 전담기관의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지자체가 법적으로 관리·운영 중인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련 데이터 베이스(DB)를 자원순환 플랫폼에 연계하기 위한 협조
- * 지자체의 지역 내 자원순환 시스템 확장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17조2항 및 18조, 제45조 등에 따른 폐기물 정보'를 플랫폼에 연계 협조 약속 시 가산점 부여

□ 일자리 창출 계획, 수행지역 발전방안 제시

- 사업수행에 따른 신규 채용 등 일자리 창출계획과 일자리 연계, 수행 지역 발전방안 관련 성과목표를 반드시 제시
- * 상생협력 평가항목 및 기준으로 포함되며, 연도별 성과평가에도 반영

□ 성과활용기간동안 발생하는 수익의 재투자 방안 제시

- 성과활용기간(5년)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의 확산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투자하는 방안(원료 저가 공급, 지역사회 환원 등)을 제시
- * 선정평가 시 성과확산 항목으로 포함되며, 최종평가 성과활용계획 항목에도 반영

□ 협약위반 및 문제과제에 대한 조치

- 선정된 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사업수행 중 문제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특별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유사사업 수행실적 제출 방법

- 주관기관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 증명서를(필요시 실적증빙자료 포함) 제출하여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 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 기관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제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보증보험 가입

- 수행기관은 협약체결 시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출연금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출연금으로 산정 불가함

* 단, 수행기관이 대기업, 공공비영리기관인 경우 이행보증증권 대신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타 규정과의 관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관리, 성과평가, 사업비 집행, 정산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본 공고문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우선 적용
- 사업목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등을 준용

□ 사업비 정산

- 이월금은 재이월 될 수 없으며, 이월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 연차별 사업비 정산은 해당 연차의 사업비 지분에 따라 실시함. 단, 최종연차 사업비 정산 시 누적 반납금액이 총사업비 대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각 지분에 따른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총사업비 지분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정산함.

□ 기 타

- 토지, 건물, 건축 조성비는 정부출연금(국비)로 산정 불가능함.
* 매칭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특성상 연구수당 계상이 불가한 사업임
- 주관기관의 책임자, 주관 및 참여기관 변경 시에는 전담기관의 승인 후에 변경하도록 해야 함.
- 사업 핵심인력은 수행기관 구성원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
- 참여기관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제 사업에 참여

하지 아니하는 기관과 책임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사업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현금·현물 출자 및 DB 연계 확약서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직인을 받아야 함
- 구축 대상(예상)부지가 필요한 경우 부지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부지확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본 사업신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함

별표

제출서류 목록

순번	서류명	양식	부수	대상	비고
1	■ 사업 신청 공문	-	1부	주관	
2	■ 사업 신청서	양식1	1부	주관	
3	■ 확약서	양식2	1부	주관	
4	■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각1부	주관,참여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대상자 각 1부 제출
5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각1부	주관,참여	
6	■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	각1부	주관,참여	유효기간 내 발급한서류에 한함 대상자 각 1부 제출
7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각1부	주관,참여	
8	■ 수행기관 일반현황	양식3	1부	주관,참여	
9	■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4	각1부	주관,참여	
10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양식5	1부	주관,참여	
11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양식6	각1부	주관,참여	
12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자체양식	각1부	주관,참여	
13	■ 수행기관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양식7	1부	주관,참여	
14	■ 지방자치단체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양식8	1부	주관	
15	■ 최근 3년간 수행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각1부	주관,참여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16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각1부	주관,참여	
17	■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양식9	1부	주관기관	
18	■ 부지 확보 확약서	양식10	1부	주관기관	
19	■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	1부	주관기관	
20	■ (가점대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폐기물 DB 연계 확약서	양식11	1부	주관	해당시
21	■ 우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부	주관기관	
22	■ 사업계획서	붙임2	1부	주관기관	PDF/한글
23	■ 발표자료		1부	주관기관	

* 별첨1 제출서류 양식 및 별첨2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